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298
----------	------

제출년월일 : 2008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고령화 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랑의 집 위탁운영 (안 제3조)
 -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음
- 운영비의 충당(안 제5조)
 - 사랑의 집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입주신청 및 자격(안 제8조)
 -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선정절차(안 제10조)

- 제천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제천시 공무원

3. 제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의안전문 : 불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불입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제천시 사랑의 집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천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제천시 청전동 482-79 번지에 둔다.

제3조(위탁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법규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비의 충당)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제천시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사랑의 집 운영에 사용하여야 함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4.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함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7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 시설 및 장비, 비품은 제천시에 귀속된다.

제8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까지 한다.

1. 사망하는 때
2.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시
3. 부양의무자에 의한 퇴거 요구시
4. 기타 사유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제10조(선정절차) ① 입주 신청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제천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결정 내용을 시설 입주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사랑의 집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 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1.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등에 의하여 혼자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자
2.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자
3. 제11조에 의한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

제13조(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천시는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⑤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제천시 공무원
 3. 제천시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사랑의 집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 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31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보수 등) 시장이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 성 요 령

- ⑤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년수)
 - ⑥ 부양가족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가족수(기피자 포함)
 - ⑦ 건강상태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평가판정조사표
에 의한 점수(요양욕구 5영역 51개 항목)
 - ⑧ ~ ⑪ 재산 및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의한 산정금액
 - ⑫ 무주택 확인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의 확인
 - ⑬ 주거형태 : 무상, 월세, 전세, 등 현재의 주거형태 표시
 - ⑭ 부양의무자(부양 기피자) 전체의 재산, 소득 등의 산정금액
 - ⑮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간 : 보건복지행정 통합조사표상의 기간
- ※ 굵은 선 안의 내용(④ ~ ⑮, ⑰)은 읍·면·동에서 작성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전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

- 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 ③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기업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시장은 수탁기관에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간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984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08.

제 천 시 장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고령화 시대에 집이 없는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랑의 집 위탁운영 (안 제3조)

-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 운영비의 충당(안 제5조)

-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입주신청 및 자격(안 제8조)

-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5년 이상 제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선정절차(안 제10조)

- 제천시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제천시 공무원
3. 제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11, FAX 641 - 5689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사	경주복지담당장	사회복지담당장			
백남식	윤관섭	최남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984호
3. 공고기간 : 2008. 10. 8. ~ 10. 29.(21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124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 임 : 공고안 1부.(별지) 끝.